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0-22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2차 국가표준기본 계획('06~'10)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시행계획

## I.

### 방송통신위원회 표준정책의 개요

## 1. 현황 및 문제점

□ WTO/TBT(상품분야), GATS(서비스분야) 협정에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 수용 의무화를 권고함에 따라, 선진국은 국제표준 획득을 자국 기술의 국제적 확산 및 시장 확대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

○ 특히, 방송통신분야는 국제표준 획득을 세계시장 선점전략으로 활용

- \* 방송통신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ITU에서는 차세대이동통신(4G), 방송, 차세대네트워크(NGN), 그린IT(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각국의 표준전쟁이 치열
- \* 세계 유수 기업들은 핵심 분야에서의 시장선점을 위해 사실표준화기구(포럼/컨소시엄) 활동 주도

- 디지털 융합환경에서는 방송통신 기기, 서비스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표준화 역할이 중요
  - 방송통신 기술의 진화 및 융·복합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전략적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부처간 협조·조정 필요
    - \* 국제표준화기구에 대응하여 ITU는 방송통신위원회가, ISO/IEC는 지식경제부가 국가대표기관으로 업무 수행
- 방송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서는 기술개발·특허·표준화 연계 강화 전략 필요
  - 방송통신서비스가 IT 전후방 산업을 견인하고, IT 융합을 주산업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적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국가표준 및 적합성 평가제도는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라 행정부처별로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

## 2. 추진목표

- 최종목표 (중점추진방향)
  - 방송통신분야 국내 원천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 및 적합성 평가체계 선진화
    -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중점 표준화 추진으로 국제표준에 국내 핵심기술 반영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표준화를 연계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

- 국내 적합성 평가기관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 국내외 표준화 역량 강화를 통한 방송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선도
  -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 및 세계사실 표준화기구에 대응한 민간표준화 활동체계 강화
  - 국내 민간 단체표준화 역량 강화를 통한 표준의 시장적합성 제고 및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개발·보급 확대

## □ 연도별 추진목표

### 1-③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 기반 확충

- 2006년 -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형 과제 지원 체계 수립
  - 베트남, 미국 등과 정보통신기기 국가간상호 인정협정(MRA) 체결 추진
- 2007년 -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형 과제 선정·지원 : 62개
  - IT제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활성화
- 2008년 -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형 과제 선정·지원 : 36개
  -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원 과제 조정
  - 한-칠레 MRA 1단계 체결 완료
- 2009년 -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형 과제 선정·지원 : 41개
  - 한-미, 한-EU MRA 2단계 추진

- 2010년 -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형 과제 선정·지원 : 40개
  - 한-미 및 한-카 MRA 2단계 추진

#### 1-④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

- 2006년 - 남북 정보통신표준화 협력 및 정보교류 : 2회
  - 남북 정보통신 관련 제도 개선안 작성 : 1회
  - 북한의 표준화규격 정보입수 : 3건
- 2007년 - 북한 정보통신 관련 기구 조사 : 1건
- 2008년 - 남북 방송통신표준화 활성화 추진방안 작성 : 1건
  - 북한의 표준화규격 정보입수 : 8건
- 2009년 - 남북 방송통신기술 실태조사 및 표준화 활성화 추진방안 작성 : 1건
  - 북한의 표준화기구 조사·분석 : 1건
  - 북한의 표준화규격 정보입수 : 8건
- 2010년 - 남북 방송통신표준화 협력 및 정보교류 증진
  - 북한 방송통신 관련 기구 조사 : 1건
  - 북한의 표준화규격 정보입수 : 8건

#### 2-⑤ 측정표준의 선진화

- 2006년 - RFID, 디지털무선 해상안전장치, 차량충돌방지 장치 등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정비
  - VDSL, 고속철도 전력유도 측정방법(안) 마련
- 2007년 - VDSL 단말장치 등 4건 기술기준 개정

- 무선기기 EMC 측정방법 등 5종 제정
- 2008년 - 통신국사, 전기통신설비 등의 내진 기준과 시험 방법 등 6종 제·개정
  - 무선설비 및 EMC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 16종 재개정
- 2009년 - T-DMB 및 T-DTV 방송 등 기술기준 10종 제·개정
  - 무선설비 및 정보기기류 EMC 시험방법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등 11종 제·개정
- 2010년 - 신규 기술 수요 증대에 따른 측정방법 개발

### 3-⑨ 공적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 도약

- 2006년 - ITU에 국가기고서 제출 : 284건
  - ITU 등 국제표준화에 반영 : 270건
  - ITU 회람문서 검토 : 289건
  - IT국제표준화전문가 선정·지원 : 272명
  - ITU 등 국제회의 개최 : 3회
- 2007년 - ITU에 국가기고서 제출 : 306건
  - ITU 등 국제표준화에 반영 : 287건
  - ITU 회람문서 검토 : 356건
  - IT국제표준화전문가 선정·지원 : 284명
  - ITU 등 국제회의 개최 : 1회
- 2008년 - ITU에 국가기고서 제출 : 385건
  - ITU 등 국제표준화에 반영 : 365건
  - ITU 회람문서 검토 : 378건

- IT국제표준화전문가 선정·지원 : 306명
- ITU 등 국제회의 개최 : 2회
- 2009년 - ITU에 국가기고서 제출 : 354건
  - ITU 등 국제표준화에 반영 : 346건
  - ITU 회람문서 검토 : 435건
  - IT국제표준화전문가 선정·지원 : 300명
  - ITU 등 국제회의 개최 : 2회
- 2010년 - ITU에 국가기고서 제출 : 319건
  - ITU 등 국제표준화에 반영 : 306건
  - ITU 회람문서 검토 : 300건
  - IT국제표준화전문가 선정·지원 : 300명
  - ITU 등 국제회의 개최 : 2회

### 3-⑩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 2006년 - 표준화 전략포럼 활동 지원 : 13개
- 2007년 - 국내 지원 표준화 전략포럼을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체제로 지원 : 21개
  - 국제사실표준화기구 기고서 제출 : 529건
- 2008년 - 국내 지원 표준화 전략포럼을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체제로 지원 : 21개
  - 국제사실표준화기구 기고서 제출 : 509건
- 2009년 - 국내 지원 표준화 전략포럼을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체제로 지원 : 21개

- 국제사실표준화기구 기고서 제출 : 539건
- 2010년 -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국내 미러포럼 지원육성 : 20개
- 국제사실표준화기구 기고서 제출 : 500건

#### 4-⑫ 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 2006년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TS) 개발 및 보급 : 671종
  -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건의 : 제정 12종, 개정 23종
  - 민간표준화기구간 국제협력 강화 : 3회
  - 정보통신 표준용어 채택 : 95어
- 2007년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개발 및 보급 : 886종
  -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건의 : 16종
  - 민간표준화기구간 국제협력 강화 : 3회
  - 정보통신 표준용어 채택 : 107어
- 2008년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개발 및 보급 : 1,073종
  -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건의 : 7종
  - 민간표준화기구간 국제협력 강화 : 3회
  - 방송통신 표준용어 채택 : 106어
    - ※ 용어표준으로 채택된 용어 수로 실적 정정
- 2009년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개발 및 보급 : 1,360종
  -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건의 : 2종
  - 민간표준화기구간 국제협력 강화 : 3회
  - 방송통신 표준용어 채택 : 105어
- 2010년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개발 및 보급 : 715종

-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건의 : 5종
- 민간표준화기구간 국제협력 강화 : 3회
- 방송통신 용어 신규 발굴·채택 : 105어

#### 4-⑬ 생산자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 2006년 - 국내 표준화 포럼 선정·지원 : 19개
  - 국내 표준화 포럼 표준안 개발 : 161건
  - 표준화 포럼 코리아 개최 : 1회
- 2007년 - 국내 표준화 포럼 선정·지원 : 17개
  - 국내 표준화 표준안 개발 : 134건
  - 표준화 포럼 코리아 개최 : 1회

※ '06년도 선정 포럼 중 일부가 '07년도에 국제사실대응포럼으로 선정

- 2008년 - 국내 표준화 포럼 선정·지원 : 22개
  - 국내 표준화 표준안 개발 : 135건
  - 표준화 포럼 코리아 개최 : 1회
- 2009년 - 국내 표준화 포럼 선정·지원 : 24개
  - 국내 표준화 표준안 개발 : 131건
  - 표준화 포럼 코리아 개최 : 1회
- 2010년 - 국내 표준화 포럼 선정·지원의 내실화
  - 국내 표준화 표준안 개발 : 100건
  - 표준화 포럼 코리아 개최 :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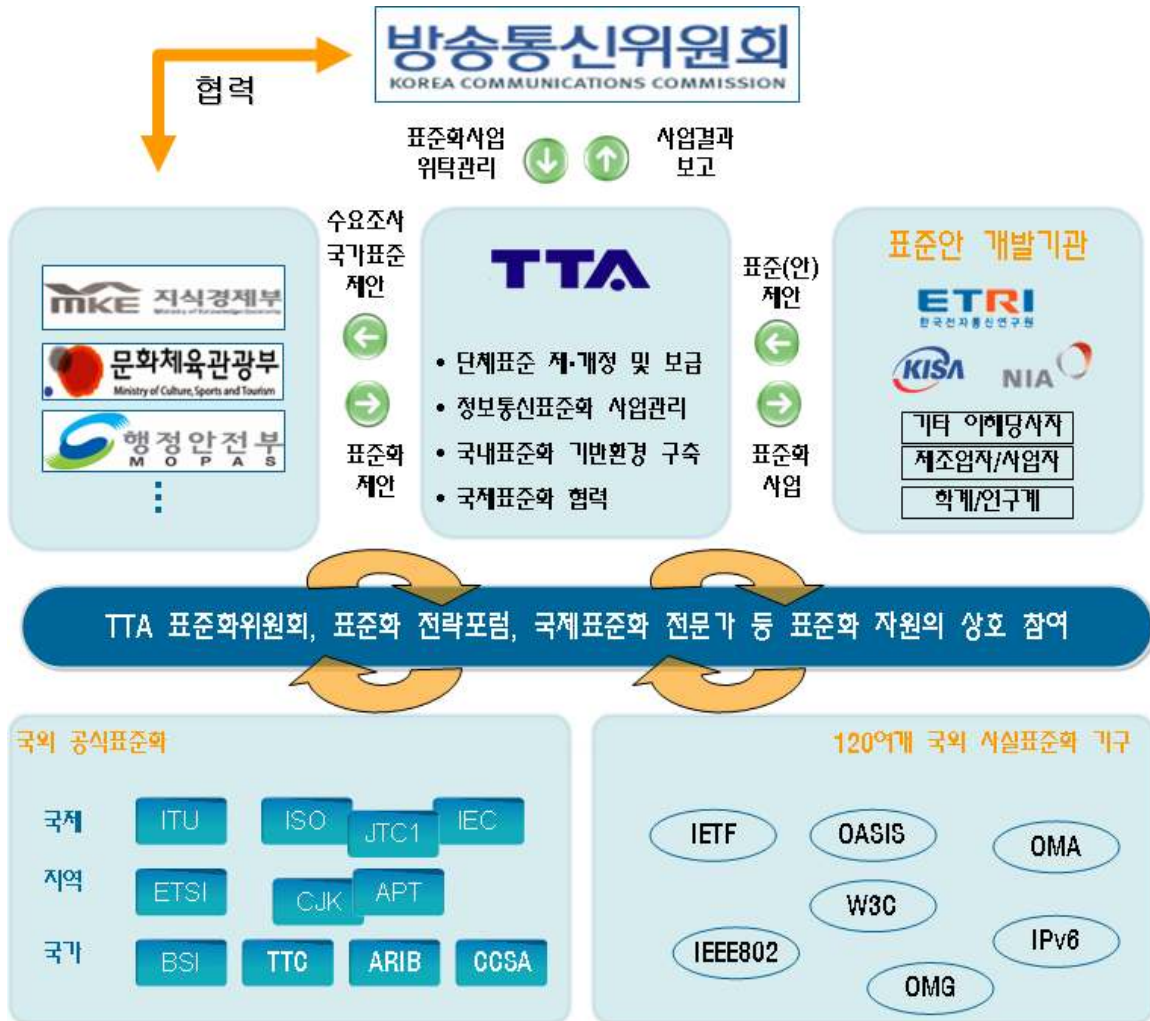
#### 4-⑭ 표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 2006년 - 정보통신 표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 11회
  - IT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 : 2회
  - IT기술표준 자문서비스 : 35회
- 2007년 - 정보통신 표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 11회
  - IT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 : 2회
  - IT기술표준 자문서비스 : 40회
- 2008년 - 방송통신 표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 16회
  -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 : 2회
  - 방송통신 기술표준 자문서비스 : 100회
- 2009년 - 방송통신 표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 17회
  -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 : 2회
  - 방송통신 기술표준 자문서비스 : 55회
- 2010년 - 방송통신 표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개최 : 17회
  -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 내실화
  - 방송통신 기술표준 자문서비스 : 50회

### 3. 추진전략

#### □ 추진체계



#### □ 관련법령 등 (지침까지 포함)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2009. 4. 1)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6. 26)
-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 2009. 5. 22)
- 전기통신기본법 (타법개정 2009. 6. 9)

- 전과법 (타법개정 2009. 6. 9)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9. 6. 9)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9. 3. 13)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정 2009. 5. 22)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 10. 29)
- 정보통신표준화지침 (정보통신부고시 제1997-29호)

## 4.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과제 번호	과제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1-③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 기반 확충	24,180	22,300	18,820	17,080	16,810	99,190
1-④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	200	100	100	40	40	480
2-⑤	측정표준의 선진화	220	240	244	215	225	1,144
3-⑨	공적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 도약	3,250	3,030	4,100	3,270	3,330	16,980
3-⑩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1,700	1,800	1,600	1,540	1,490	8,130
4-⑫	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3,090	3,040	3,505	3,440	3,498	16,573
4-⑬	생산자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600	900	800	660	660	3,620
4-⑭	표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480	480	395	500	320	2,175
총 계		33,720	31,890	29,564	26,745	26,373	148,292

## II.

# 15대 정책과제별 시행계획

### I-3-29

## 방송통신 전략분야 기술개발 연계 표준화 추진(방송통신위원회)

###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 수립 및 방송통신 전략분야 표준 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

#### □ 사업 내용

#### < 사업추진 필요성 >

- ◇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연계된 선순환 연구개발 체계 강화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

#### [ 선순환 연구개발 체계 ]



- 국내외 기술·표준화 동향분석을 통한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 국제표준 선도 및 표준특허 가능분야 발굴 등 국내외 표준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적시 표준개발 지원
  - 국제표준 선도 분야, 산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내 표준 조기정립 분야,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분야의 표준개발 지원

##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

제29조 (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 전파법 제63조

제63조 (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5.~7. (생략)

## 2.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	매년	Rolling	Plan	→
전략분야 적시 표준개발 지원**	← 55개 →	← 62개 →	← 36개 →	← 41개 →	← 40개/년 →

\* 방통위 주관으로 지경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추진

\*\* 방통위·지경부 공동주관

### 3.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목표

- 방송통신 전략분야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Rolling Plan)
- 선행 개발된 표준을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개발기술을 국내외 표준에 반영하여 실용화를 촉진
-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체계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도 및 표준특허 가능분야 발굴

\* “기술개발-표준화-지재권”을 연계하는 선진형 R&D체계 구축

#### □ 2009년도 추진실적

- 국내외 시장, 기술, 표준화 동향분석 및 국내외 환경분석 (SWOT)을 통한 37대 중점기술의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체계 구축 및 연계과제 선정·지원
  - 민간수요(Bottom-up)와 정책수요(Top-down)를 반영하여 41개 과제 선정·지원

#### □ 평가

- 차세대 이동통신, 그린ICT 등 국제표준 선도를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분야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국제 표준화 주도권 강화



## 4.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 전략분야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Rolling Plan)을 통해 국제표준 선도 및 표준특허 가능분야 발굴
-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체계 강화를 통해 선행 개발된 표준을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개발기술을 국내외 표준에 반영하여 실용화 촉진

### □ 2010년도 추진 계획

- 기술개발-표준화 연계과제 도출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강화
  - 기획·과제선정·성과평가 등 기술개발 및 표준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전문가가 공동 참여
  - 기술개발과 표준화사업의 표준화 성과 및 국제표준 동향 공유를 통해 국제표준 특허 가능분야 발굴 및 확보 전략 수립과정의 시너지 효과 달성
- 향후 국제표준 선도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략분야를 체계적으로 발굴·지원
  - 차세대 이동통신, 3DTV, 그린ICT, 미래인터넷 등 방송통신 기반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표준분야 발굴

###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기술개발 연계과제 도출을 위한 사전기획 : '10년 9월
- 2010년도 기술개발 연계과제 도출 및 선정 : '10년 12월

##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국제적 추세에 따라 전략국가와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활성화하여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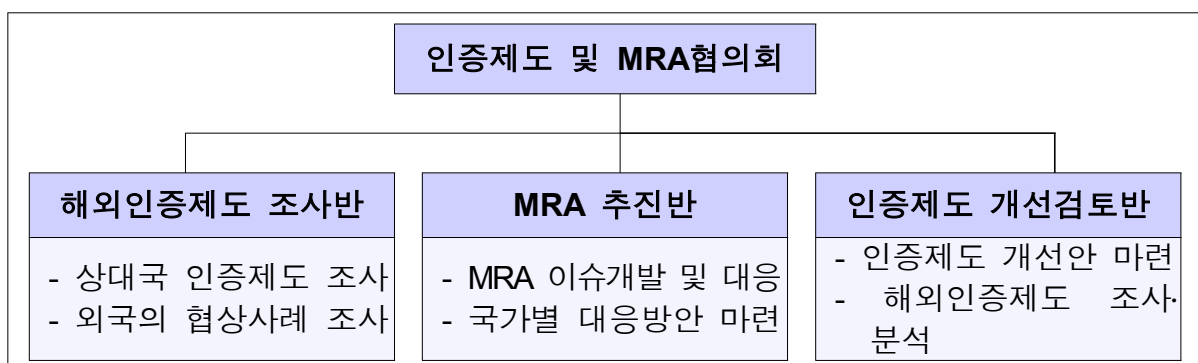
### □ 사업 내용

#### < 사업추진 필요성 >

◇ 국가간 MRA 활성화 방안 마련

- WTO 체제하에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내 인증제도 개선 및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추진
  - 자기적합선언(SDoC) 등 민간 역할을 강조하는 인증제도 검토
  - 국가간 인증제도 조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및 상호인정협정 추진

###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제33조의3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 정부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부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인증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외국시험기관을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 전파법 제79조제1항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 2.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활성화	2국추진 ←	2국추진 →	1국 ←→	2국추진 ←→	1국/년 ←→

### **3.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 목표**

-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MRA) 확대

#### **□ 2009년도 추진실적**

-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MRA) 확대
  - 싱가포르와 MRA 1단계 체결 협상중
  - 미국, 캐나다와 MRA 2단계 체결 협상중
-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품질관리규정, 시험기관 평가 절차서 등 정비

#### **□ 평가**

- MRA 추진기반 강화를 위하여 시험기관 관리 체계를 국제 기준에 따라 개편하는 등 적합성평가 체계 개편
-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MRA 지속 추진 필요

### **4.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MRA) 확대

□ 2010년도 추진 계획

-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MRA) 확대
  - 한·카 및 한·미 MRA 2단계 추진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한·카 및 한·미 MRA 2단계 추진 : '10년 12월

##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국제기준에 적합한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 및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 대한 전문화 등 인증체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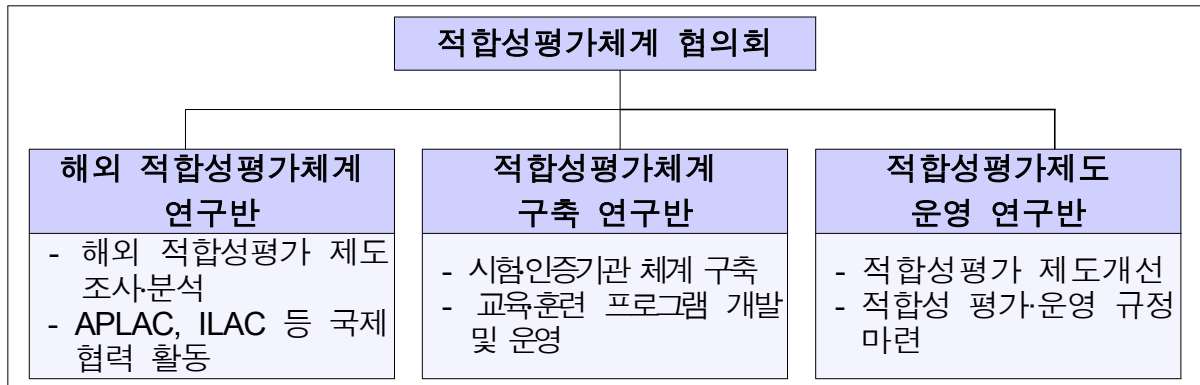
### □ 사업 내용

#### < 사업추진 필요성 >

◇ 방송통신 분야 적합성평가 체계 선진화를 통한 국제적 신뢰성 제고

- 국제기준에 적합한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
  - 전자파 적합성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능별 인증체제로 개편
  -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에 대비하여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
- 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규제 완화
  - 기기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며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
  -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잠정인증 제도 도입

##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전파법 제46조

제46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①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할 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 전파법 제57조

제57조 (전자파적합등록) ① 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전자파적합의 등록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정 등을 받은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제33조의3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 정부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2.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세부사업					
글로벌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		계획 수립 ↔	전파법 개정 ↔	전파법 개정 ↔	제도운영 ↔

## 3.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목표

- 국제기준에 적합한 적합성평가 지정체계 도입 및 전기안전·전자파 분야 인증기능 전문화 등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체계 선진화 추진

### □ 2009년도 추진실적

- 선진적 적합성평가기반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및 심사기구의 운영요령, 심사규정 마련 등
- 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 마련
  - 적합성평가 유형 재분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잠정인증 제도 도입 기반 마련 등



- 불량기기 유통근절을 위한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사후관리 업무지침 마련 및 방송통신기기의 수입통관 절차 개선

#### □ 평가

- 국제기준에 적합한 적합성평가체계 마련 등 선진적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4.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국제기준에 적합한 적합성평가 지정체계 도입 및 전기안전·전자파 분야 인증기능 전문화 등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체계 선진화 추진

#### □ 2010년도 추진 계획

- 선진적 적합성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 제·개정
  -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 적합성평가 기준·절차 마련
  - 방송통신기기인증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기안전, 전자파적합 등 수평적·기능별 인증체제로 개편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
- 방송통신기기 관리체계의 합리화 및 선진화 실현

- 사후관리 경험 및 기술적 배경을 바탕으로 방송통신기기 위해 맵 구축
- 기기 위험도,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한 등급 분류 등 맵 구축 연구
- 방송통신기기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사후관리 실시

####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전과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10년 6월
-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안 마련 : '10년 8월
- 국제표준에 부합한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10년 8월
- 선진적 적합성평가체계 기반 구축 : '10년 12월

## 1. 최종목표

- 남북한 방송통신 표준 통일기반 조성

## 2.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남북한 방송통신표준 관련 기관간의 협력 및 정보교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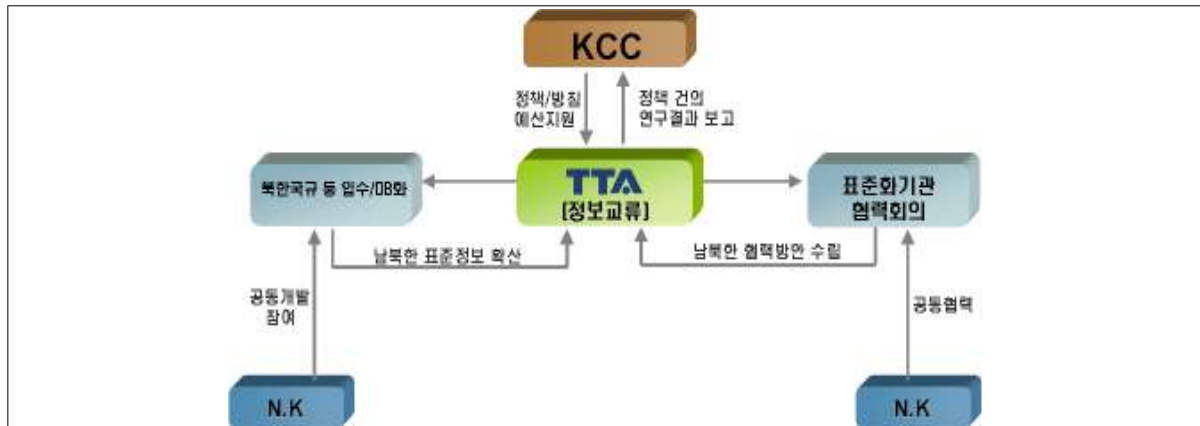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 사업추진 필요성 >

- ◇ 향후 남북한 방송통신의 교류·협력 선도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 남북한 방송통신 표준화 협력 및 정보교류 추진
- 북한(체신성) 표준자료 입수
- 남북한 방송통신 표준화 관련 제도 개선방안 도출

##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4조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남북한 방송통신표준화 협력 및 정보교류	2회 ↔				2회/년 ↔
제도 개선안 도출 및 관련 자료 분석	1건 ↔	1건 ↔	1건 ↔	1건 ↔	1건/년 ↔
북한 표준규격 정보 입수	3건 ↔		8건 ↔	8건 ↔	8건/년 ↔

### 4.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 목표

- 남북 표준 관련 기관간의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한 남북 표준 통일 기반 조성

#### □ 2009년도 추진실적

- 북한 방송통신기술 실태조사 및 남북한 표준화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 1건
- 북한 규격화 관련 표준화 기구 조사·분석 : 1건
- 북한 소프트웨어 조사·분석 : 1건
- 북한의 표준화규격 등 정보입수 : 8건

## □ 평가

- 북한 측 방송통신표준화 협력 미진
  - 중개인 등을 통해 접촉을 추진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동협력을 위한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북한과의 실질적인 방송통신 교류·협력이 가능한 항목을 북한 관계자 및 국제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발굴하고 공동 조사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방송통신표준화 협력의 효과 제고 필요

## 5.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남북 표준 관련 기관간의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한 남북 표준 통일 기반 조성

### □ 2010년도 추진 계획

- 남북한 방송통신표준화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 1건
- 남북한 방송통신표준화 협력 및 정보교류 추진 : 1회
- 남북한 방송통신 관련 표준화 기구 조사·분석 : 1건
- 북한의 표준화규격 정보입수 : 8건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조사연구사업 공고 : '10년 1월
- 접수·평가 및 선정, 협약 : '10년 3월
- 사업 최종 평가 : '10년 12월

## 1. 최종목표

-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야 측정기준 및 절차를 ITU 등 국제표준 체계로 개편

## 2.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새로운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장에 따른 관련 기술 기준·측정방법을 개발·보급

###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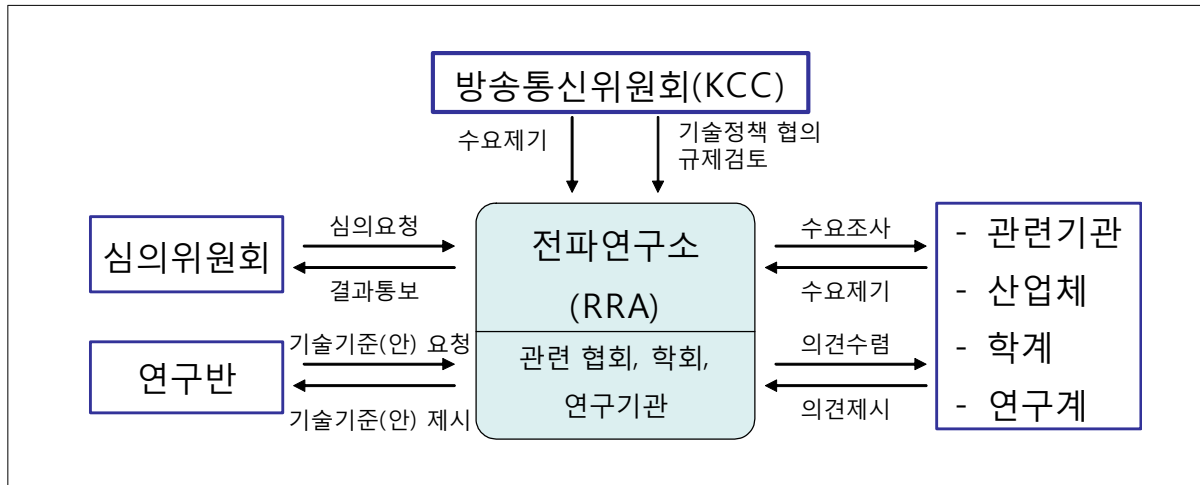
#### < 사업추진 필요성 >

◇ 광대역 무선통신기술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관련 기술기준·측정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

- 광대역무선통신, 차량충돌방지장치 등 새로운 방송통신 기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 시각장애인 유도설비 등 복지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을 정비



##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전파법 제45조 및 제61조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1조(전파연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이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9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 3.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무선설비관련 측정기술 개발	5종 ←→	5종 ←→	10종 ←→	6종 ←→	7종/년 ←→
무선기기 EMC 측정방법 재개정	2종 ←→	5종 ←→	6종 ←→	11종 ←→	3종/년 ←→
전력유도 등 현 측정방법 정비	2종 ←→	2종 ←→	6종 ←→	3종 ←→	3종/년 ←→

### 4.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설비, 무선기기 EMC 등 신기술 관련 기술기준·측정방법 개발 및 보급
-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측정방법 및 기준 등 방송통신 분야 측정방법 정비

#### □ 2009년도 추진실적

- 지능형 홈네트워크 도입을 위한 구내선로 기술기준 개정 : 2건
- 통신국사, 전기통신설비 등의 내진 시험방법 제정 : 1건
- 광, 케이블 모뎀 기술기준 및 형식승인 처리방법 개정 : 1건
- 사업용, 해상 및 항공이동 업무용 무선설비 등 기술기준 개정 : 3건
- 자기유도 및 자가용 TRS 소출력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 2건

- T-DMB 및 T-DTV 방송 기술기준 개정 : 1건
- 무선 및 정보기기류 EMC 시험방법,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 11건

## □ 평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기술기준을 조기에 개정하여 원활한 서비스 도입 기반 조성
- 이용자 편의 제고 및 신규 설비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한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재개정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검토 필요

## 5.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설비, 무선기기 EMC 등 신기술 관련 기술기준·측정방법 개발 및 보급
-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측정방법 및 기준 등 방송통신 분야 측정방법 정비

### □ 2010년도 추진 계획

- 구내통신관련 기술기준 개정 : 1건
- 전기통신설비 등의 내진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 1건
- 인터넷전화 기술기준 및 형식승인 처리방법 개정 : 1건
- 해상 및 항공이동 업무용 무선설비 등 기술기준 개정 : 3건

- UWB 및 용도 미지정 소출력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 3건
- AT-DMB 방송 기술기준 개정 : 1건
- 무선기기, 방송수신기기 및 철도관련 시험방법 개정 : 3건

####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구내통신관련 기술기준 개정 : '10년 9월
- 전기통신설비 등의 내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 '10년 10월
- 인터넷전화 기술기준 및 형식승인방법 개정 : '10년 7월
- 해상 및 항공이동 업무용 무선설비 등 기술기준 개정 : '10년 11월
- UWB 및 용도 미지정 소출력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 '10년 11월
- AT-DMB 방송 기술기준 개정 : '10년 11월
- 무선기기, 방송수신기기 및 철도관련 시험방법 개정 : '10년 11월

###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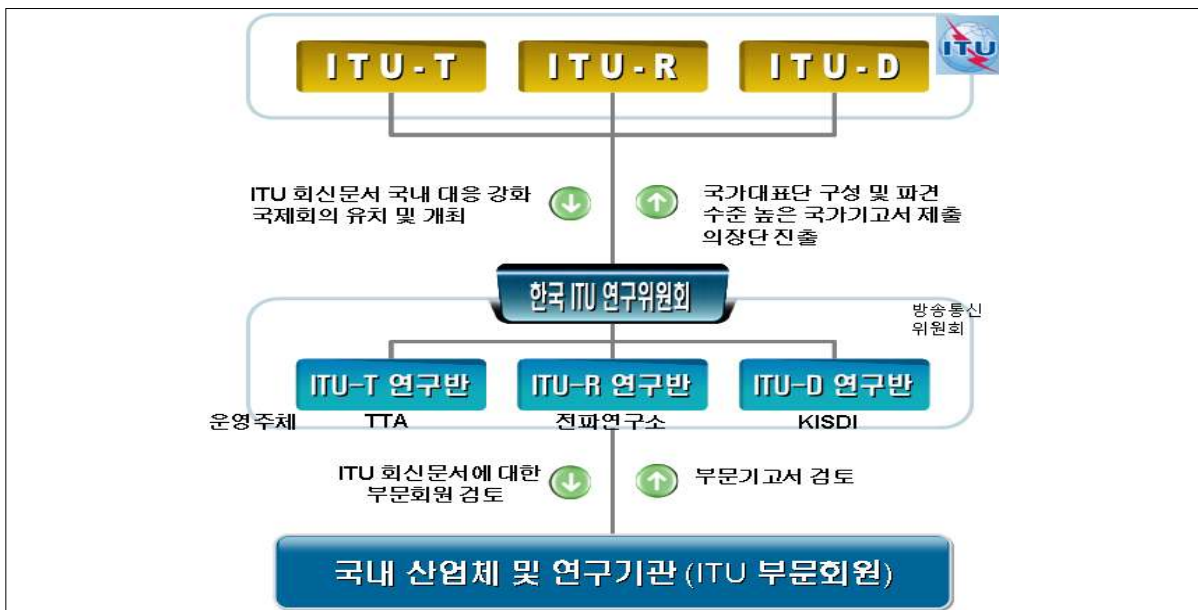
- ITU 등 공적 국제표준화기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활동 강화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 정부간 조약기구인 ITU 등 공적 표준화기구에서의 국내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강화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
- 방송통신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 ITU연구 위원회를 국내대응창구로 활용하여 ITU 등 공적 국제표준화 기구의 의제 분석 등 국제표준화활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기고서를 개발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4조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5조

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기고서 제출	284건 ↔	306건 ↔	385건 ↔	354건 ↔	319건/년 ↔
국가기고서 국제표준 반영	270건 ↔	287건 ↔	365건 ↔	346건 ↔	306건/년 ↔
국내 대응회의 개최	106회 ↔	100회 ↔	90회 ↔	80회 ↔	90회/년 ↔
ITU 회람문서 검토	289건 ↔	356건 ↔	378건 ↔	435건 ↔	300건/년 ↔

## 3.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 목표

- 국내 방송통신 기술 및 정책의 ITU 등 국제 공적 표준에의 반영 확대

### □ 2009년도 추진 실적

- ITU 등에 국가기고서 제출 : 354건
- ITU 등 국제표준화에 반영 : 346건
- ITU 회람문서 검토 : 435건

### □ 평가

- 국제표준화기구(ITU)에 대응하기 위해 354건의 국가기고서를 제출하고 이 중 346건이 반영되어 국제표준화기구(ITU) 표준기고서 점유율 12% 이상 확보

- 국내 20핀 휴대폰 충전단자 표준을 ITU-T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초안으로 채택('10년 최종승인 예정)

#### **4.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국내 방송통신 기술 및 정책의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 반영 확대

##### **□ 2010년도 추진 계획**

- ITU 등에 국가기고서 제출 : 319건
- ITU 등 국제표준화에 반영 : 306건
- ITU 회람문서 검토 : 300건

#####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10년도 ITU 국가기고서 검토 등 기본계획 수립 : '10년 1월
- ITU 등 국가기고서 검토 및 제출 : 연중
- 2010년도 활동결과 분석 및 평가 : '10년 12월



###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제표준화 전문가 선정·지원을 통한 국제표준화회의 의장단 진출 확대 및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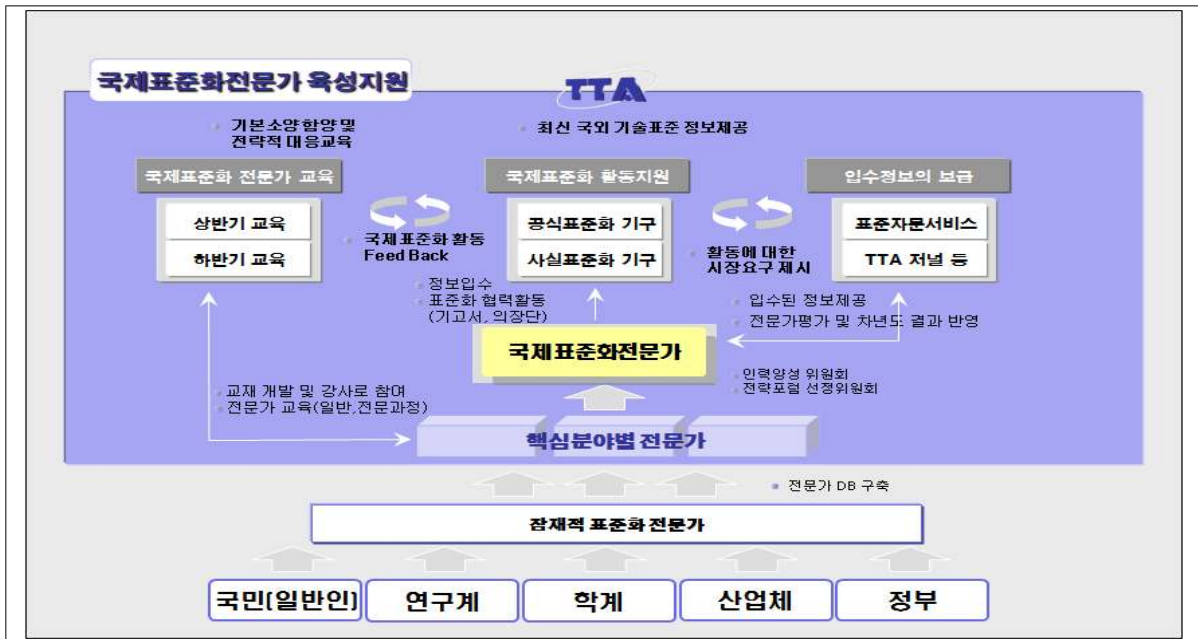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표준화활동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지원

- 국제표준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표준화 전략분야의 전문가 선정 및 지원
  - 전략분야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및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지원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4조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5조

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표준화전문가 선정		272명 ←→	284명 ←→	306명 ←→	300명 ←→
회의 참가 지원		343회 ←→	313회 ←→	335회 ←→	233회 ←→	280회/년 ←→

\* 방통위 주관으로 지경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추진

### 3.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 목표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 : 115명

#### □ 2009년도 추진 실적

- 주요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 115명
- ICT국제표준화전문가 선정·지원 : 300명
  - 공식표준화기구(ITU, JTC1, APT) 및 사실표준화기구(3GPP, IETF, IEEE 등) 등 30여개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지원 : 233회

#### □ 평가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은 '09년 목표 대비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환율 상승으로 인한 1회 지원 평균 금액 상승으로 전문가 지원 횟수는 목표 대비 축소

### 4.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 : 118명

#### □ 2010년도 추진 계획

-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가 POOL 지속적 확보 및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 및 활동 지원 강화

- 방송통신기반 융합 등 기술변화에 따른 표준화 전략분야, 국내 핵심역량분야 위주의 전문가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 전문가 보강

####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 평가 : '10년 1월
- 신규 국제표준화전문가 선정 공고 : '10년 2월
- 접수·평가 및 선정 : '10년 2월~3월
- 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 지원 : '10년 1월~12월

##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주요 방송통신 국제표준화 회의의 국내 유치를 통한 아국 의견 반영 강화 및 국내 기술 및 서비스의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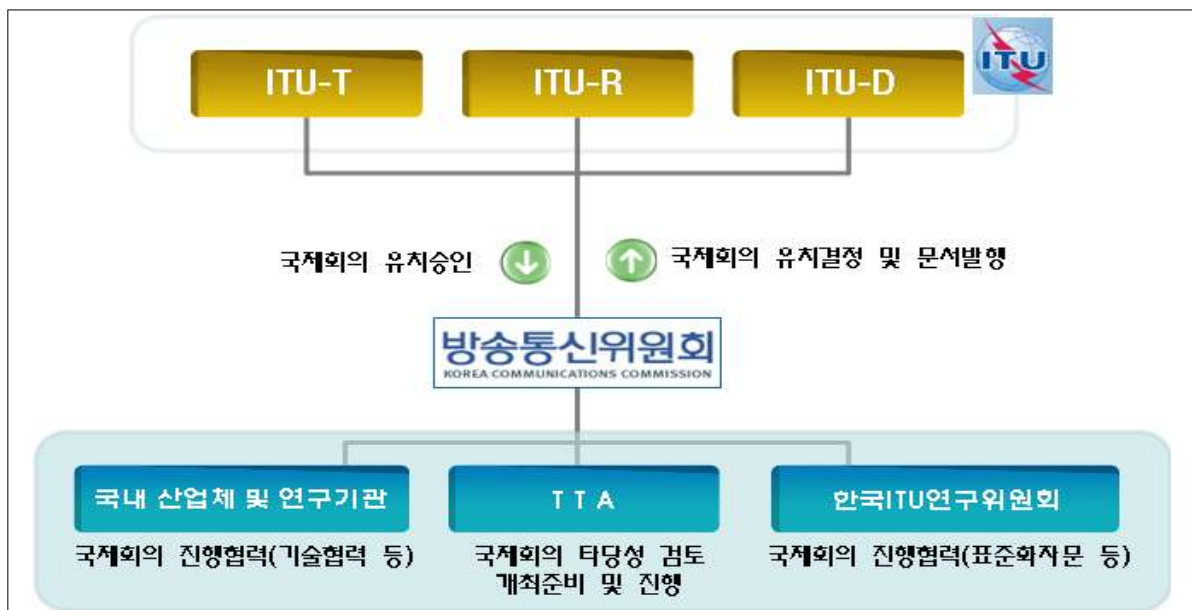
### □ 사업 내용

#### < 사업추진 필요성 >

- ◇ 한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주요 국제표준화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최종의사결정 단계에서 한국에 유리하도록 유도

- ITU 연구반회의 등을 국내에 유치하여 ITU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영향력 확대
  - 주요 국제표준화회의의 국내 유치로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강화하고 국내 표준화전문가의 의장단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

###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4조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5조

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세부사업					
ITU 등 국제회의 개최	3회 ↔	1회 ↔	2회 ↔	2회 ↔	2회/년 ↔

### 3.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 목표

- ITU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ITU 연구반 회의의 국내 유치 및 개최 지원

#### □ 2009년도 추진 실적

- ITU 연구반 회의 국내 개최 및 지원 : 2회
  - ITU와 공동으로 "기후변화와 ICT 국제심포지움" 개최(9월 23일)
  - ITU-R SG1 WP1A(전파공학), WP1B(전파정책) 국제회의 개최 지원 (2월 25일~3월 4일)

#### □ 평가

- ITU 최초로 시도된 온라인 동영상 기반의 국제컨퍼런스인 "기후변화와 ICT 국제심포지움"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종전 ITU 심포지움 대비 높은 참가율(종전 300명/동행사 576명) 및 약 530톤의 온실가스 절감(9억원) 효과를 거둠
- 국내기술 현황을 해외에 소개하고, 국내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에 기여

## 4.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ITU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ITU 연구반 회의의 국내 유치 및 개최 지원

### □ 2010년도 추진 계획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 및 지원 : 2회
  - ITU-T SG3(과금 및 회계원칙), AWF-9(아태무선통신포럼) 국제회의

###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ITU-T SG3(과금 및 회계원칙) 회의 개최 : '10년 5월
- AWF-9(아태무선통신포럼) 회의 개최 지원 : '10년 9월



## 1. 최종목표

- 국제표준화 선도 및 관련 산업체 진흥을 위해 차세대 방송통신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화 전략포럼 지원·육성

## 2.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의 국내 미러(Mirror) 포럼을 지원·육성하여,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대응체계 구축 및 국내 방송통신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 사업 내용

#### < 사업추진 필요성 >

- ◇ 산업계 중심의 글로벌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어, 산업계 중심의 포럼/컨소시엄 등을 통한 국제적 대응과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이 필요

- 세계 사실표준화기구의 대응체계 강화
  - 주요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대응한 국내 미러(Mirror) 포럼 선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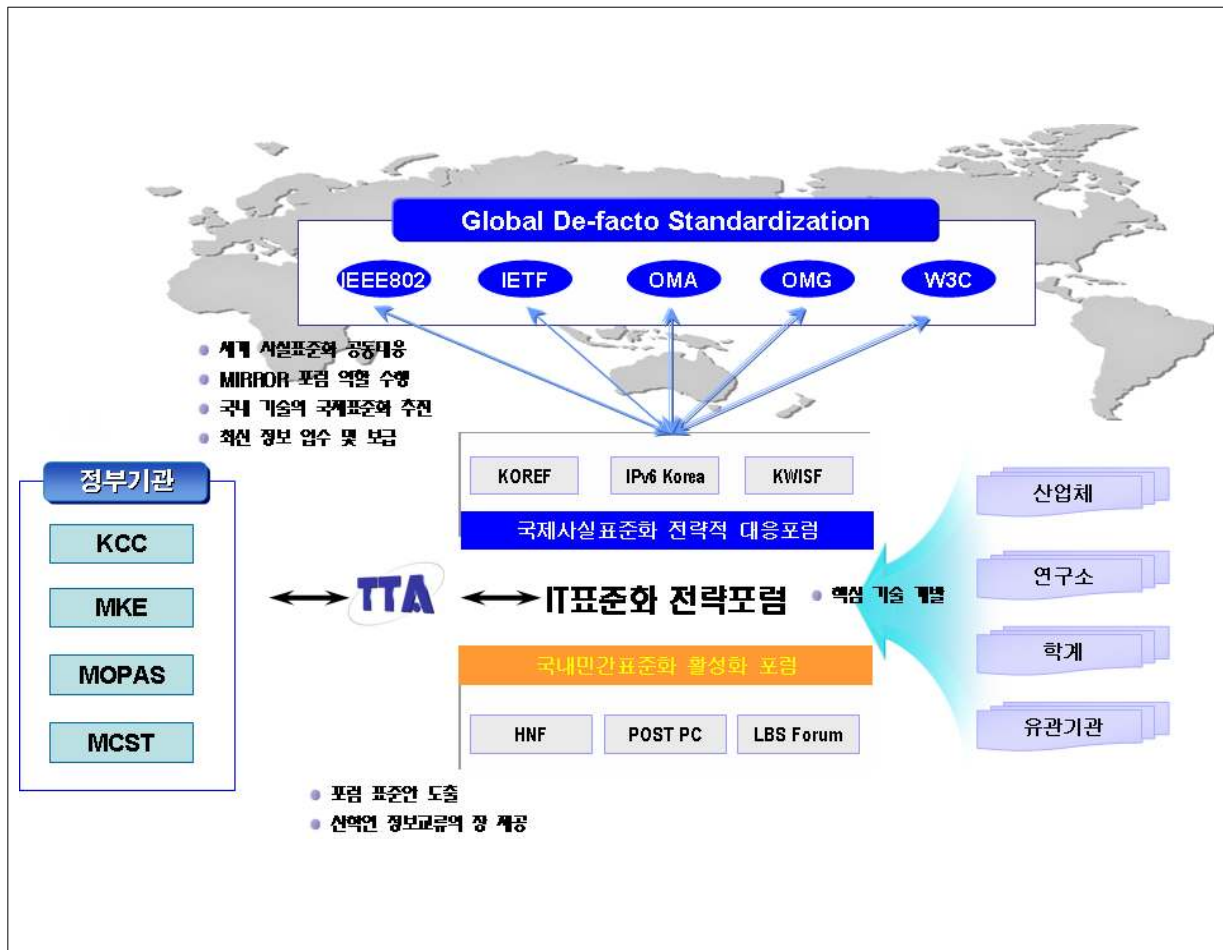
- 사실표준화기구간 MoU 및 전략적 협력을 통한 민간 국제 표준화 추진 능력 배양

○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확대

- 국제사실표준화기구의 의장단 진출, 한국 기고서 제출 및 채택

○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분석 및 전략 가이드라인 수립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4조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5조

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주요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국내 대응 미리 포럼 선정·지원		13개	21개	21개	21개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28명	30명	53명	53명	50명/년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기고서 제출		473건	529건	509건	539건	500건/년

\* 방통위 주관으로 지경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추진

## 3.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 목표

- 주요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의 국내 대응활동 강화 및 방송 통신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선도

### □ 2009년도 추진 실적

- 주요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국내 대응 미리 포럼 선정·지원 : 21개
-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확대
  - (의장단 진출) 86개 회의체 53명 (국제회의 개최) 5회 (기고서 제출) 539건

### □ 평가

- 국제사실표준화기구 국내 대응 미리 포럼 선정·지원은 '09년 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며, 제출된 기고서 중 4건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

## 4.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주요 국제사실표준화기구의 국내 대응활동 강화 및 방송통신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선도

### □ 2010년도 추진 계획

- 주요 국제사실표준화기구 국내 대응 미리 포럼 선정·지원 : 20개
- 국제사실표준화기구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확대
  - (의장단 진출) 86개 회의체 53명 (국제회의 개최) 5회 (기고서 제출) 500건

###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10년 2월
- 선정 및 협약 : '10년 3월
- 최종 평가 : '10년 12월

##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민간표준 제정 역량을 강화하여 표준의 시장적합성 제고
- 민간표준화기구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가·국제표준 간 연계를 위한 허브 역할 수행

### □ 사업 내용

#### < 사업추진 필요성 >

◇ 급속한 방송통신 기술발전 및 시장의 다양화로 민간의 전문성과 민첩성을 활용한 민간표준화 강화를 통해서 글로벌 표준 전쟁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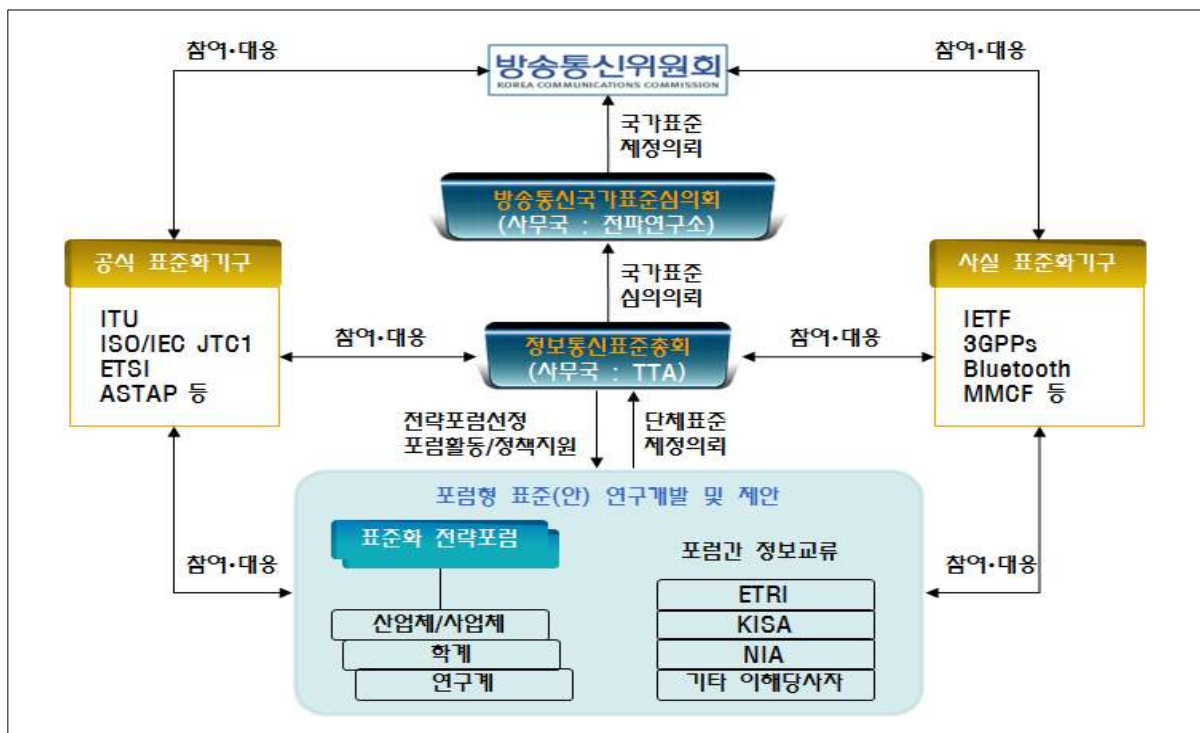
- 방송통신분야 민간표준화단체의 육성·지원을 통한 단체 표준 수준 제고 및 상향식 표준화 추진
  - 방송통신 표준화 중기계획 수립을 통한 단체표준 개발
  - 방송통신분야별 표준화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표준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결집 및 표준 전문성 확보
  - \* TTA 위원회 운영 현황 : 68개 위원회, 190여개사, 3,700여명 위원
  - 민간 단체표준 중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건의
  - \* KICS : Kore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andard

○ 민간표준화기구의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국제 표준간 연계 강화

- 기술성이 우수한 단체표준은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와 연계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안

\*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CJK Standards Meeting), 세계표준협력회의(GSC) 등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1조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 7. (생략)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2조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

제29조 (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제30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둘 수 있다.

○ 전파법 제63조

제63조 (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표준화지침 제16조

제16조 (협회의 기능) 협회는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 및 국가표준(안) 건의
2. 표준의 보급 및 확산
3. 국제표준화 동향조사 및 국제회의 참가활동
4. 지적재산권이 관련된 표준화 과제에 대한 처리
5. 기타 표준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개발	671건	886건	1,073건	1,360건	715건/년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건의	12건	16건	7건	2건	5건/년
민간표준화기구간 국제협력 강화	3회	3회	3회	3회	3회/년

## 3.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목표

- 국내 핵심기술 표준을 적기에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와 연계하여 국제표준에 반영

\* ITU-T IPTV, NGN FG, IMT-advanced와 연계하여 표준화 추진

## □ 2009년도 추진실적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개발 : 1,360종
-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건의 : 2종
- 민간표준화기구의 국제협력 회의 활동 : GSC, CJK, 3GPPs 등

## □ 평가

- 다양한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방송통신표준을 적기에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 4.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국내 핵심기술 표준을 적기에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와 연계하여 국제표준에 반영

### □ 2010년도 추진 계획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개발 : 715종
-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건의 : 5종
- 민간표준화기구의 국제협력 회의 활동 : GSC, CJK, 3GPPs 등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제·개정 : '10년 6월, 12월
- CJK 회의 참가 : '10년 4월
- GSC 회의 참가 : '10년 8월

##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국내외 표준정보 입수 및 보급을 통해 방송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신기술 개발에 기여

### □ 사업 내용

#### < 사업추진 필요성 >

◇ 신속히 변화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국내 산업계에 보급하여 적기의 방송통신기술 개발 유도

- 국내외 표준화 활동 정보를 One-Stop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 국내외 방송통신표준 관련 정보의 DB화
  - TTA 표준화위원회 등 주요 표준화 정보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표준정보 보급
  - 국내 정보통신단체표준 DVD판 제작·보급

##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5.~7. (생략)

○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제30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둘 수 있다.

○ 정보통신표준화지침 제16조

제16조(협회의 기능) 협회는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 및 국가표준(안) 건의
2. 표준의 보급 및 확산
3. 국제표준화 동향조사 및 국제회의 참가활동
4. 지적재산권이 관련된 표준화 과제에 대한 처리
5. 기타 표준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방송통신표준 정보 D/B 입력		62,000건 ↔	62,574건 ↔	78,634건 ↔	85,182건 ↔
방송통신표준 정보 보급		120만회 ↔	125만회 ↔	125만회 ↔	125만회 ↔	125만회/년 ↔

## 3.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목표

- 국내외 표준화 활동 정보의 신속 제공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 □ 2009년도 추진실적

-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기술표준이슈 정보 제공 : 52회 발송, 104건
- 신속한 최신 표준 정보 DB 구축 : 85,182건(누계)
  - 국내외 표준 및 표준화 관련 목록 및 원문 DB : 57,336건
  - 방송통신 용어사전 DB 현행화 및 전자화 : 27,846건
-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표준화 정보 서비스 환경 및 표준화 웹서비스 성능 개선 및 웹 보안 체계 구현

## □ 평가

- 국내외 다양한 표준화 정보를 산·학·연에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방송통신분야 표준화 정보 확산 보급과 산업 발전에 기여

## 4.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국내외 표준화 활동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 □ 2010년도 추진 계획

-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표준화 정보 제공 : 52회
- 신속한 최신 표준 정보 DB 구축 : 90,000여건



○ 표준화 정보 DB 구축 및 서비스 기능 개선

- 국내외 표준 및 표준화 관련 목록 DB 구축 및 현행화
- 방송통신 용어사전 DB 현행화 및 전자화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표준화 정보 DB 구축 및 개선, 서비스 제공 : 연중
- 표준화 정보자료 발간·보급 : 연중

##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새로운 방송통신용어를 표준화하고 이를 보급·확산하여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어 순화 및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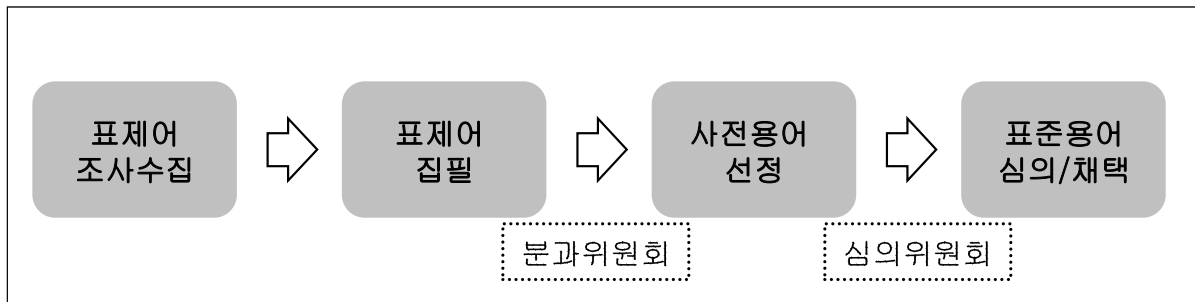
### □ 사업 내용

#### < 사업추진 필요성 >

- ◇ 방송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신규 기술용어 사용에 대한 혼란 및 정보 격차가 심화되어 신규 용어에 대한 표준화 및 보급 필요

- 방송통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국어순화·표준화
  - 방송통신 신규 표제어 및 삽화 수집, 신규 용어 집필 및 선정
  - 방송통신용어 분과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방송통신 용어의 보급 및 확산
  - 방송통신 용어 링크 서비스 제공
  - 방송통신용어사전 및 CD-ROM 제작·보급

##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5.~7. (생략)

### ○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제30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둘 수 있다.

### ○ 정보통신표준화지침 제16조

제16조(협회의 기능) 협회는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 및 국가표준(안) 건의
2. 표준의 보급 및 확산
3. 국제표준화 동향조사 및 국제회의 참가활동
4. 지적재산권이 관련된 표준화 과제에 대한 처리
5. 기타 표준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표준용어 심의·채택		95어	107어	106어	105어
방송통신용어사전 CD-ROM 발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방송통신용어 심의위원회 개최		2회	3회	2회	2회	2회/년

## 3.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목표

- 방송통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국어순화·표준화
- 방송통신 용어의 보급 및 확산

### □ 2009년도 추진실적

- 방송통신용어 심의위원회 운영 : 2회
- 방송통신표준용어 채택 : 105어

- 방송통신용어사전 CD-ROM 발간

#### □ 평가

- 신규 기술분야에 대한 용어 표준화를 통해 전문가·일반인의 용어 사용 혼란 방지에 기여

### 4.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국어순화·표준화
- 방송통신 용어의 보급 및 확산

#### □ 2010년도 추진 계획

- 방송통신용어 심의위원회 운영 : 2회
- 방송통신표준용어 채택 : 105어
- 방송통신용어사전 CD-ROM 발간

####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방송통신용어 분과위원회 개최 : '10년 3월, 6월, 9월, 12월
- 방송통신용어 심의위원회 개최 : '10년 6월, 12월

##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민간포럼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유도
- 국내 민간 기술개발 유도 및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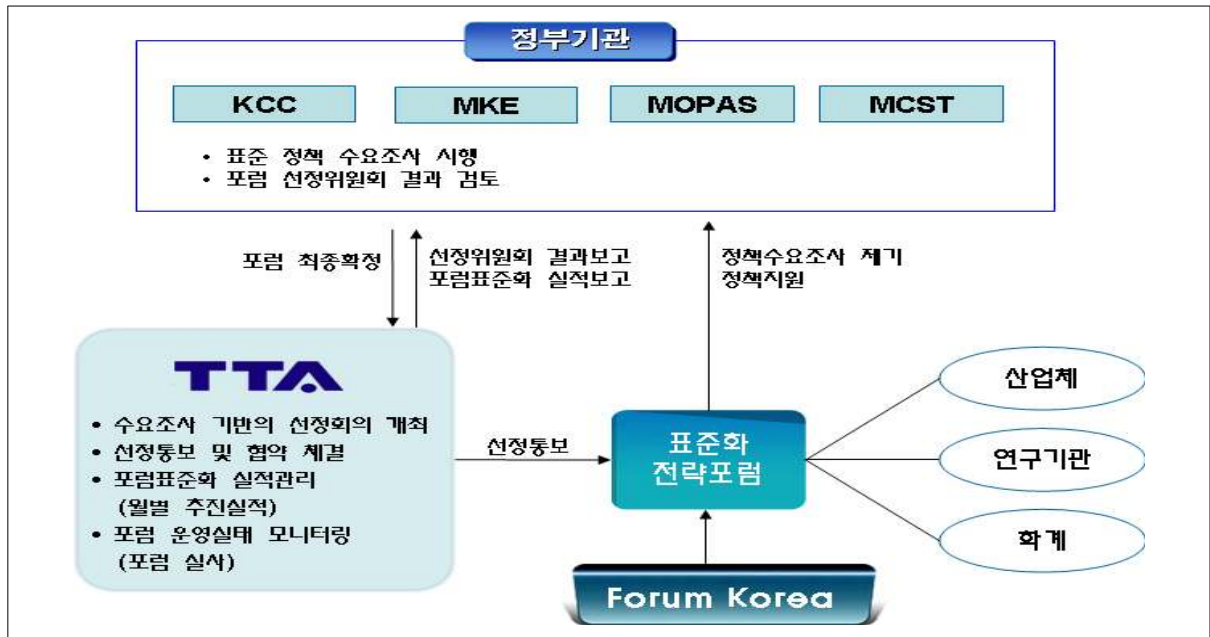
### □ 사업 내용

#### < 사업추진 필요성 >

◇ 방송통신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상향식 표준화가 필요

- 국내 활동 기반 표준화 포럼의 전략적 선정 및 지원
  - 전략 분야 등 중점 표준화 지원 분야 선정·지원
- 핵심 분야별 표준화 전략포럼의 사실표준 제정 활동 강화
  - 표준화 포럼 지원을 통해 적극적 포럼 표준 발굴
  - 국내 전문가 정보교류, 협력 및 핵심분야 홍보 강화
- 국내 IT 민간표준화 정보교류를 통한 민간중심의 표준화 체계 강화
  - ICT Forum Korea 개최로 국내 포럼 활동 및 최신 국내외 표준화 기술 이슈 홍보

##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

제29조 (표준화의 추진)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 전파법 제63조

제63조 (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2조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 7. (생략)

## 2.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IT표준화 포럼 선정·지원	19개 ↔	17개 ↔	22개 ↔	24개 ↔	20개/년 ↔
포럼 표준(안) 발굴	100건 ↔	134건 ↔	135개 ↔	131건 ↔	100건/년 ↔
ICT Forum Korea 개최	1회 ↔	1회 ↔	1회 ↔	1회 ↔	1회/년 ↔

\* 방통위 주관으로 지경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추진

## 3.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 목표

- 민간 포럼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유도
- 국내 시장 요구를 반영한 포럼 표준안 발굴
- 국내 민간표준화 정보교류를 통한 민간중심의 표준화 체제 강화

## □ 2009년도 추진 실적

- 국내 기반 표준화 포럼의 전략적 선정 및 지원 : 24개
- 방송통신 핵심분야별 표준화 전략포럼 규격 개발 : 131종
- ICT Forum Korea 2009 개최 : '09년 5월 11 ~ 12일

## □ 평가

- 상대적으로 표준화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표준화 참여 기회 제공에 기여

## 4.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민간 포럼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유도
- 국내 시장 요구를 반영한 포럼 표준안 발굴
- 국내 민간표준화 정보교류를 통한 민간중심의 표준화 체제 강화

### □ 2010년도 추진 계획

- 국내 기반 표준화 포럼의 전략적 선정 및 지원 : 20개
- 방송통신 핵심분야별 표준화 전략포럼의 사실표준 제정활동 강화
- ICT Forum Korea 2010 공동 개최

## □ 2010년도 주요추진 일정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10년 2월
- 선정 및 협약 : '10년 3월
- ICT Forum Korea 2010 공동 개최 : '10년 5월
- 최종 평가 : '10년 12월

##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국제표준화 회의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소양 함양
- 중소기업 방문·자문서비스를 통한 방송통신분야 표준화 전문가 양성 및 표준기술 활용 활성화

### □ 사업 내용

#### < 사업추진 필요성 >

◇ 방송통신 표준화 전문가의 지속적인 육성 강화는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산업체 경쟁력의 원천

-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 실시
  - 전문과정 실시에 따른 전문가 활동 가이드라인 개발
- 표준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표준 자문서비스 추진
  - 국제표준화전문가의 중소기업 방문·표준화 상담
  - 최신 표준화기술 및 표준화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제공

##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

제29조 (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 전파법 제63조

제63조 (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2조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5.~7. (생략)

## 2.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교육	2회 ↔	2회 ↔	2회 ↔	2회 ↔	2회/년 ↔
기술표준 자문서비스 실시	35회 ↔	40회 ↔	100회 ↔	55회 ↔	50회/년 ↔

## 3.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목표

- 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지원을 통해 국내외 기술의 국제 표준화 역량 강화

### □ 2009년도 추진실적

-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2회, 125명 참가
- 표준전문인력을 활용한 IT기술표준 자문서비스 : 55회, 355명 참가

### □ 평가

- 국제전문가가 국제표준화 회의 참여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적 지식 습득의 기회 제공
-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표준화 경험 등이 부족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4.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지원을 통해 국내외 기술의 국제 표준화 역량 강화

### □ 2010년도 추진 계획

-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2회
- 표준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표준 자문서비스 : 50회

###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업공고 및 협약 : '10년 4월
  - 중간사업 평가 : '10년 6월
-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 '10년 6월, 9월



##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국내외 방송통신 표준기술의 보급을 통한 산업계의 표준 기술 활용 활성화
- 방송통신 표준기술 홍보를 통한 국내 표준화 기반 확산

### □ 사업 내용

#### < 사업추진 필요성 >

◇ 국내외 방송통신 표준기술의 보급과 홍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산업체 경쟁력 원천인 표준화 인식 제고

- 방송통신표준 기술 교육
  - 방송통신 주요 표준에 대한 기술 이해도 증진 및 표준 활용도 제고
- 방송통신표준 기술 세미나
  - 주요 표준에 대한 최신 동향 및 기술을 전파하고 관련 기술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 추진체계



## □ 추진근거

### ○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

제29조 (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 전파법 제63조

제63조 (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2조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5.~7. (생략)

## 2.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방송통신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회	5회	5회	5회
방송통신표준 기술세미나 개최		6회	6회	8회	12회	12회/년

## 3. 2009년도 추진성과

### □ 2009년도 추진목표

- 방송통신표준화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표준기술 산업계 활용 활성화

### □ 2009년도 추진실적

- 국내외 방송통신기술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총 21회
  - 방송통신 표준 기술 교육 실시 : 5회, 277명 참가
    - \* 분야 : USN, WiBro, LTE/MIMO, IPTV 등
  - 방송통신표준 기술 세미나 : 12회, 1,015명 참가
    - \* 분야 : 모바일IPTV, 미래인터넷, 그린IT, IMT-advanced 등
  - 방송통신표준 관련 IPR 세미나 : 1회
  - 대학특강 : 3회
- 정보통신표준 활용 실태 조사 및 분석

- 정보통신표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표준화 과정에 반영하여 표준의 활용성 제고 및 국민 편의 증진

#### □ 평가

-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개발되는 정보통신 표준에 대한 정보 습득의 기회 제공

### 4. 2010년도 추진계획

#### □ 2010년도 추진 목표

- 방송통신표준화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표준기술 산업계 활용 활성화

#### □ 2010년도 추진 내용

- 국내외 방송통신기술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연 17회
- 방송통신표준 활용 실태 조사 및 분석

#### □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

- 교육 및 세미나 계획 수립 : '10년 1월
  - 방송통신기술 교육 개최 : '10년 4월, 5월, 9월, 10월
  - 방송통신기술 세미나 : '10년 2월 ~ 12월
- 방송통신표준활용 실태 조사
  - 사업 공고 및 협약 : '10년 2월